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 구분	경고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고 시 횟수별 300만원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고 시 횟수별 500만원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고 시 횟수별 1,000만원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고 시 횟수별 2,000만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1회	2회·3회	4회·5회	6회부터 10회까지	11회 이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1회	2회부터 5회까지	6회부터 8회까지	9회 이상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1회	2회	3회·4회	5회 이상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